

## 6. 평가

### 가. 시험

모든 시험은 담당교수 재량에 따라 실시한다.

- 1) 정기시험: 매학기 중간, 기말시험 각 1회씩 실시
- 2) 임시시험: 매학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시행되는 과제, 학습세미나 등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교수의 재량에 따라 수시 실시
- 3) 특별시험: 지정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시험만으로 성적을 취득케 하는 시험(시험실시 2개월 전 공고)
- 4) 졸업시험: 시험, 논문, 실험실습보고서, 실기 발표
- 5) 추가시험: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각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실시

### 나. 평가

- 1) 강의 담당교수는 매 교과목별로 학기말 시험 종료 후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성적평가를 완료해야 하며,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
  - A등급의 비율을 전체 수강인원의 50%이하(소수점 이하 반올림)로 하고, B+등급 이하의 평가는 담당교수 재량으로 하는 경우
    - 실험실습교과목, 수강인원(절대평가 대상학생 제외)이 15명 미만인 교과목 분반, 외국어강의 A형 중 절대평가 요청이 있는 강좌(다만, 총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A등급의 비율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), 상대평가가 곤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과목, 교양 교과목 중 교양교육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요청이 있는 강좌
  - 절대평가를 실시하고, A등급 비율은 제한받지 않는 경우
    - 현장실습 교과목, 사범대(교직이수자)의 학교현장실습, 교과교육영역 교과목 중 요청이 있는 강좌, 일반대학원·특수대학원(정책대학원 제외)·전문대학원(법학전문대학원, 문화전문대학원, 의학전문대학원, 치의학전문대학원 제외) 개설 교과목, 군복무 원격수업
  - 절대평가 대상자: 시간제등록학생, 대학원생(보충학점 수강자), 교류학생, 국적이 외국인 학생
- 2) 출석 미달 자(총 수업시간 수 3/4미만)는 F(0)로 처리
- 3) 성적 인정: 각 교과목별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하되 D°(60점)급 이상은 급제하고 F급은 낙제한다.
- 4) 평가방법이 합불제인 교과목의 성적표기는 취득은 "S", 미취득은 "U"로 하며, 평균 평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 다. 성적의 등급

등 급	실 점	평 점
A+	95 ~ 100	4.5
A°	90 ~ 94	4.0
B+	85 ~ 89	3.5
B°	80 ~ 84	3.0
C+	75 ~ 79	2.5
C°	70 ~ 74	2.0
D+	65 ~ 69	1.5
D°	60 ~ 64	1.0
F	0 ~ 59	0

## 라. 성적의 공개

- 성적은 평가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개되며,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## 마. 성적 우수

- 학기당 15학점 이상 취득한 학점의 성적평균 평점이 3.75이상인 학생에게는 "성적우수"를 학적부에 등재한다.

## 바. 학사 경고

- 1) 성적 평균평점 1.75 미만인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"학사 경고"를 한다.
- 2)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는 제적한다.(단, 2006이전 여수캠퍼스입학자의 경우 통합 전 학사경고 횟수는 제외한다.)
- 3) 유급제를 시행하는 학과는 학사경고를 과하지 아니한다.

## 사. 유 급

- 1) 의학과
  - ① 학년 평균성적이 C(2.0) 미만인 경우
  - ② 취득학점 중 F 성적이 있는 경우
  - ③ 유급된 자는 당해학년 중에 취득한 성적이 C+ 이하인 교과목 재수강

2) 수의학과

- ① 당해학년 평균성적이 1.75 미만인 경우
- ② 취득학점 중 F 성적이 있는 경우
- ③ 유급된 자는 당해학년 중에 취득한 성적이 C+ 이하인 전공교과목 재수강

3) 법학전문대학원

- ① 매 학년말 성적평균평점이 2.0이하인 자
- ② 유급된 자는 해당학년(2개 학기)에 취득한 B<sub>0</sub>이하의 모든 학점 무효

4) 치의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

- ① 당해학년의 평균성적이 2.0 미만인 경우
- ② 취득학점 중 F 성적이 있는 경우
-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성적평균평점이 2.0 이상인 자로서 낙제(F)인 교과목의 학점이 총 이수학점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급확정 이전에 재시험에 응할 수 있음
- ④ 유급된 자는 당해학년도 교육과정 재이수